

국제어학원운영규정

제정 2004. 4. 6 (규칙 제189호)

개정 2006. 10. 19 (규칙 제224호)

개정 2007. 11. 27 (규칙 제253호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21조 2항에 의하여 초당대학교국제어학원(이하 "국제어학원"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원장) ① 국제어학원에는 원장을 두되,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국제어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국제어학원을 대표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업무) 국제어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.

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
2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발표회
3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
4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의 운영
5. 유학생 신·편입생 선발 및 입학수속
6. 본교 재학생 국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및 프로그램 운영
7. 교내·외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어학 교육
8.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
9. 지역사회의 외국어 교육에 관한 협조
10.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한 사항

제4조 (조직) ① 국제어학원에는 유학생 생활관리팀, 입시 및 학사운영팀, 국제교류 및 홍보팀을 둔다. 각 팀에 팀장을 두되 팀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유학생 생활관리팀은 유학생의 기숙사 생활 및 교내·외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며 관장한다.

③ 입시 및 학사 운영팀은 국제어학원의 유학생 모집 선발 및 어학교육에 관한 사항과 한국어 강좌 개설,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④ 국제교류팀은 국제어학원의 대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기획 및 홍보를 관장한다.

⑤ 행정직원은 문서관리, 회계, 시설관리 업무 및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 구성 및 업무) ① 국제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본교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

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〈삭제〉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어학원의 기본 운영 계획
2. 국제어학원의 예산 및 결산
3. 국제어학원의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4.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 (회의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2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7조 (연구원) ① 국제어학원에는 어학 교육 및 연구를 전담할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연구원은 사업수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.

③ 보조연구원은 본 대학교 조교 중에서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 한다.

제8조 (재정) ① 국제어학원의 재정은 기성회비, 자체수입 및 각종 위탁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원장은 예·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③ 회계연도는 초당대학교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9조 (시행세칙) 국제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입학)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본 대학 소정의 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자가 D4 비자를 발급 받아 입학한다.

제11조 (교육) ① 외국인 및 재외외국인의 교육은 제10조에 의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국제어학원의 교육과정 에 의거 교육하며, 교육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(제189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초당대학교어학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제224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253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초당대학교어학연구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